#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사유
   ○ 지역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  ○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   - 단체 관광객 유치,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
   ○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(안 제5조)
   -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
   - 국내▪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
   -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등
   ○ 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(안 제8조 ~ 10조)
   -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
   - 관광안내소의 업무
   ○ 관광업무 위탁(안 제11조 ~ 12조)
   -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▪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

4. 참고사항
   가. 관계법령 :「관광진흥법」제2조, 제76조
  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   다.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 라. 입법예고 : 2015. 5. 28. ~ 6. 17.(20일간)
   마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▪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,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

- 안 제5조는 관광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 관광기획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,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,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,

-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절차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, 군 주관 또는 후원 하는 행사, 정치·종교집회 등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,

-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▪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▪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,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관광산업 육성과 더불어 관광수입원 발굴 및 주민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.